##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337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이광희・박지원・양문석

김문수 · 이재강 · 민병덕

김 윤 · 송재봉 · 김우영

박상혁 • 박정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2배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 건수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에 비하여 이행강제금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음.

이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소 1.7배 이상으로 가중부과하도록 가중부과율의 하한을 규정함으로써 영리목 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2항).

법률 제 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00분의 100으로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생 략)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	②
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u>100분의</u>	<u>100분의 70</u>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	이상 100분의 100 이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중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